

울산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1나14892 판결 [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2. 9. 27 선고 2021나14892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1. 7. 23 선고 2020가단119997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

담당변호사 설창환

피고, 피항소인 C의 파산관재인 D

변론종결 2022. 6. 14.

판결선고 2022. 9. 27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. 7. 23. 선고 2020가단119997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동구 E 임야 697㎡의 C 지분 3분의 1 전부에 관하여
울산지방법원 2003. 5. 13. 접수 제3519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1. 5.
12.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출된
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
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
그대로 인용한다(이하에서 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).

2.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“갑 제1, 2호증의”를 “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
포함)의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 “못한 것이므로”를 “못한 것이고,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 원고의 이
사건 임야의 C 지분에 관한 예약완결권이 시효소멸 되지 아니하였으므로, 설령 착오가 아니라고
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하므로”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.『 또한 원고는, 이 사건
임야의 C 지분에 관하여 2003. 4. 15. 체결된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체결일로부터 10년이
경과된 2013. 4. 15.경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, 2011. 5.경 이 사건 임야를
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본등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C 지분에 관한 예약완결권 역시 행사하였기
때문에 위 지분에 관한 예약완결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앞서 본 사정

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‘H
임야 956㎡와 I 임야 1217㎡의 각 C 지분’에 관하여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,
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본등기 당시 이 사건 임야의 C 지분에 관하여도
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』

○ 제1심판결 제3쪽 제11행을 “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”로 고쳐 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준영, 판사 이주황, 판사 정의철